

한국철도공사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전 화: 042-615-3340

저작물 표시

제 호 : 붙임 자료 참조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대리인” 이라 한다)와 ○○○○○(이하 “이용자” 라 한다)는 대리인이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위에 표시된 저작물(저작물에는 상표 및 디자인 등의 모든 저작물 중에 이용하고자 특정한 저작물로, 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대리인” 은 “이용자” 에 대하여 “위 저작물” 의 이용을 허락하며,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배포·전송 등의 권리는 대한민국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용자” 가 “위 저작물” 을 이용한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인” 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정한 자로서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말한다.
2. “이용자” 라 함은 대리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을 말한다.
3. “저작물” 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가 창작한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다만 본 계약의 목적물은 한국철도공사의 모든 저작물 중에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특정한 저작물(“위 저작물”)을 말한다.
4. “상품 등” 이라 함은 “위 저작물” 을 이용하여 제작한 출판물, 전자책, 상품, 온라인 동영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제작물을 말한다.
5. “저작권 사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대리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를 말한다.
6. “저작물 이용” 이라 함은 대리인의 관리저작물을 이용자가 출판, 상품 제작, 온

라인 동영상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허락의 범위 및 제한)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은 “위 저작물” 을 아래의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한 이용범위로 한정한다.

이용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물 제작 및 배포 [] <input type="checkbox"/> 전자책 제작 및 전송 [] <input type="checkbox"/> 상품(완구류, 식품류 등) 제작 및 배포 []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방송, 전송 등(애니메이션 제작 등) []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 []
------	--

② 이용자가 위의 이용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허락한 이용범위를 벗어나서 이용을 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서 대리인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리인은 이용자에게 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이용자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갱신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저작물의 인지도 상승, 이용자의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계약 갱신시 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저작권 사용료) ① 이용자는 “위 저작물” 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최소수익보상금액 [○○○○○○○원(일금 ○○○○○○)]을 대리인에게 아래의 일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 체결시 : [○○○○○○○원(일금 ○○○○○○)] / 0000년 00월 00일(계약일) (최소수익보상금액의 50%)
2. 잔금 지급시 : [○○○○○○○원(일금 ○○○○○○)] / 0000년 00월 00일(계약일로부터 1월내)(최소수익보상금액의 50%)

② 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제1항의 최소수익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료가 발생이 된 경우, 해당 상품의 매출액의 00%에 해당하는 사용료(이하 ‘러닝 로열티’ 라고 한다.) 중 최소수익보상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금액을 최소수익보상금액을 초과한 날로부터 월 단위로 익월 10일까지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이용자는 최소수익보상금액 및 러닝 로열티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 사용료 산정 자료 제출 의무) ①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4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매출액, 제조·판매수량, 상품 정보 등)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대리인에게 사용료 지급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대리인이 지정한 제3자 포함)이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 후 최소 3년간 판매보고서 및 회계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의 정보 및 원본 파일 제공 의무) ① 대리인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대상물에 대한 정보 및 원본 파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자의 정책에 의하여 제공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대리인이 제공한 저작물의 정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저작물의 정보 및 원본 파일은 본 계약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의 승인 및 샘플 제공 의무) ① 이용자는 상품의 제작 및 판매·배포·전송 등을 이행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자료 및 샘플을 저작자(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저작자는 위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및 의견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상품의 홍보·광고·판촉 등을 이행할 경우에 제1항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작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저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상품의 디자인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재질, 인쇄기술, 생산 공정 등 기타 수정이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저작자의 승인 후 제작한 상품을 판매·배포·전송 등을 이행하기 전에 최종 상품의 견본을 저작자에게 제출하여 판매 등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최종 승인된 상품 00점을 판매 개시 전에 저작자에게 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제반 법령과 업계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한다.

제8조(저작물의 내용의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

리를 침해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자” 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저작권의 표시 및 저작인격권의 존중)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상품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권 표시 및 저작권 보호 문구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시 및 저작권 보호 문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작권 표시 방법]

한국철도공사에서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KORAIL /



[저작권 보호문구]

한국철도공사에서 적절한 문구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본 상품은 한국철도공사와 (주)○○○○(이용자 기관명)가 제조 , 판매하는 것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제10조(상품의 제조 및 판매) ① 본 계약의 체결 후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이용자는 대리인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향후 개발 할 상품의 세부 품목 설명과 총판 및 도소매 가격, 판매시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조, 판매 계획서를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 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상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전에 대리인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및 저작자는 제1항의 이용자가 제출한 상품에 대한 계획서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저작자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를 거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저작자의 최종 상품에 대한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제작·판매하여야 한다. 위 ○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또는 제작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리인은 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의 권리 침해 등) ①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해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상표 침해, 부정경쟁 등 그 밖의 이유로 판매 중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 받은 때에는 즉시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대리인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제3자를 발견한 경우에 즉시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의 제조·판매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이용자는 “위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를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① 대리인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최소수익보상금액 및 러닝 로열티 지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부도 등으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불능이 된 경우
4. 덤핑 등 일반적인 판매 행위를 벗어나 본 계약의 목적물인 저작물의 이미지를 손상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 이외에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의 해제·해지는 서면 통보를 받은 때에, 본조 제2항의 해제·해지는 그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제·해지 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손해배상액에 10%를 가산하여 그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 내용의 변경)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 계약 당시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상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 종료의 효과) ① 이용자는 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리인에게 본 계약에 의해 제조된 상품의 재고수량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리인이 재고수량을 확인한 후 파악된 재고수량에 따른 로열티 금액을 대리인에게 즉시 지급한 경우에만 계약 종료 후 0개월 재고 소진기간에 재고수량에 대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재고처리기한이 경과한 때 또는 해제·해지된 때에는 본 계약에 의해 제조한 상품의 재고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수량을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리인은 이용자로부터 제조원가로 인수하거나 제3자가 인수하도록 중재하며,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참관하여 폐기한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자는 대리인이 제공한 저작물 정보 및 원본 파일 등을 대리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의 시안, 도면 등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진행했던 상품의 개발에 수반된 자료와 물품은 모두 이용자의 책임하에 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해, 사고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대리인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공정한 관행에 맞게 처리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사회통념 및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8조(재판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리인과 이용자는 제소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비밀 유지 의무) 본 계약서에 의해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타) ① 대리인과 이용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②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 ○○

대리인

이용자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TEL : 02-2608-2097)

주소 :

사업자번호 : 101-82-07807

기관명 :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기관명 :

대표자 : 이 사장 정 흥 택 (인)

대표자 :